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에 따른 「개인정보·민감정보·고유식별정보」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「행정정보 공동이용」동의서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」에 따른 「취업지원 신청」과 관련하여, 아래 동의자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신청인의 취업지원 수급자격 판단을 위하여 아래(뒷면) 내용을 모두 자세히 읽고 숙지하였으며,

본인의 개인정보·민감정보·고유식별정보·과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아래와 같이 동의 여부를 확인하며, 이와 관련된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.

□ **동의자 인적사항**(신청인의 가구원)

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신청인과의 관계	휴대전화 번호		동의확인 (서명 또는 인)	확인일자	
				[] 안내 문자 수신 동의	(서명 또는 인)		
				[] 안내 문자 수신 동의	(서명 또는 인)		
				[] 안내 문자 수신 동의	(서명 또는 인)		
				[] 안내 문자 수신 동의	(서명 또는 인)		
				[] 안내 문자 수신 동의	(서명 또는 인)		

- *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.
- * 아래의 동의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

□ 취업지원 신청인 인적사항

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주 소	연락처		

□ 개인정보·민감정보·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
○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가구원으로,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¹⁾ 제공(보유기관으로 부터 수집·제공을 포함)에 동의합니다.

[]동의함 []동의하지 않음

0	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가구원으로,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수집·제공을 포함)에 동의합니다.					
		[]동의함	[]동의하지	않음
0	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가구원으로,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부터 수집·제공을 포함)에 동의합니다.					
		[]동의함	[]동의하지	않음
\bigcirc	본인은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	제영	9조제4항어	따i	라 관할 세	무서장

○ 본인은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・ 운영하는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에 대 하여 동의합니다.

[]동의함 []동의하지 않음

○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가구원으로,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[]동의함 []동의하지 않음

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

-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를 확인하였습니다. []확인함 []확인하지 않음

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-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, 전자정부법 제36조, 제37조, 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⁴⁾을 통해 위 제3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※ 안내: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 자격 여부 확인이 제한 될 수 있으며,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구원이 해당 정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[]동의함 []동의하지 않음

위 취업지원 신청인은 본인의 가구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, 불이익 안내,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각 항목의 동의 또는 확인 여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

동의서 제출일자 : 년 월 일

취업지원 신청인 성명 : 서명()

○○지방고용노동(지)청장 귀하

□ 개인정보·민감정보·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 내용 설명

1.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지원 내용

- 기관: 고용노동부,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 직업안정기관,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3항제5호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기관
- 지원 내용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(이하 "취업 지원서비스"라 함)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(이하 "구직촉진수당"이라 함)

2. 개인정보(DB)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
-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진 이용
-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
- 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법원·행정안전부·보건복지부·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 의 장 및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
-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·제공하는 과세정보의 이용

3.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• 이용 항목

-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정보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
- 세3/소세1항에 따른 행성성모 공동이용센터, '시방세기본럽」 세2소세1항세28호의 시방세성모통신방
 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법원·행정안전부·보건복지부·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 의 장 및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: 사업자등록부, 국민건강보험·국민연금· 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보훈급여·공무원연금·공무원재해보상급여·군인연금·사립학교교직원연금 ·별정우체국연금·농업직불금·농지연금의 가입 여부, 가입 종류, 소득정보, 부과맥 및 수급액, 건물, 토 지, 자동차,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,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, 가족관계등록부(가족 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훈인관계증명서), 장애 정도,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,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, 출입국 정보
-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

4.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
-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, 수급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: 30년

5. 제3자 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

- 제공 목적: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갖추었는지 결정하기 위한 수급 요건의 확인·조사
- 제공받는 자: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을 운영하는 해당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원·행정안전부·보건복지부·국세청등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·단체의 장
-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등
-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7조에 따라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

6.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 거부권,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

-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□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내용 설명

-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 당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신청인과 신청인의 기구원에 대한 아래에서 정한 행정정보 를 전자정부법 제36조, 제37조, 제38조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합니다.
- 주민등록등본·초본, 사업자등록증, 휴업·폐업사실증명원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소득금액증명원, 납세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서(유족), 취업지원대상자, 병적증명서,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출입국정보, 검정고시합격증명서,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등
- 그 밖에 가구원 확인, 소득 및 재산 조사, 취업경험요건 확인 등에 관한 자료 중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확인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료
- ※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사업에 등록된 개인정보(DB)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 끝.